

# 해양환경관리공단 장의(葬儀) 집행 지침

제 정	2008.	1.	21
개 정	2008.	4.	23
개 정	2010.	8.	10
개 정	2011.	7.	1
개 정	2014.	5.	23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해양환경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공단이 주관하는 장의(이하 “공단장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유가족의 요청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2장 공단 장의(葬儀)위원회

**제3조(장의위원회 구성)** ①공단 장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은 각 본부장, 실장 및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중에서 한다.  
<개정 2014.5.23>

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정보화운영팀장으로 한다.  
<개정 2014.5.23>

**제4조(회의운영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

권을 가진다.

**제5조(의결사항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공단장(公團葬)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2. 장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
3.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

②제1항제1호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임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
2. 기타 공단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

③제1항에 의한 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공단장의 집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 제3장 공단장(公團葬)의 장의집행위원회

**제6조(장의집행위원회의 운영)** ①위원회의 사무지원과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공단장의 장의집행위원회(이하 “집행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집행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, 위원장은 그 아래 장의집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.

③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이 되고, 간사는 정보화운영팀장으로 한다. 다만, 선박운항과 관련한 선원·선박사고의 경우에는 선박운영규정 별표3에서 정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이 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11.7.1, 2014.5.23>

④집행위원회 업무진행에 필요한 팀 인원은 15명 이내의 공단 직원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집행위원회의 기능)**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유족보상 협의
2. 장례식장 및 장지 지원에 관한 사항
3. 영결식 진행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례진행에 필요한 업무

## 제4장 장례 준비

**제8조(장의기간 및 장의비용)** ①공단장의 장의기간은 유가족과 협의하여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유가족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②공단장에 소요되는 장의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다.

③전항의 장의비용은 빈소 설치부터 영결식 및 장지까지 장의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.

**제9조(전문 장례업체 선정)** 공단은 공단장의 엄숙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 장례업체를 선정하여 공단장의 의례 및 장례 행정지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회계처리)** ①집행위원장은 장의 기간 중 집행할 예산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집행위원장은 공단장의 완료시까지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하고, 장의 종료 후에는 위원회에 지출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0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